K·C·A
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s Association

2026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단계별 적용요건과 TD·DoC 작성·관리

NOTICE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링크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 EU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간한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이 확인해야 할 PPWR의 주요 요구사항, 단계별 적용일정 및 문서 대응절차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6년 7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PPWR 위임·이행법령, 조화표준, 공통기술규격, 재활용성 평가기준 및 EU 집행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지침·해석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규제 대응 시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제품 또는 포장의 PPWR 적합성이나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은 실제 제품정보와 공급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TD·DoC의 상세 작성방법과 작성 사례 및 양식은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관리 및 배포 권한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습니다.

CONTENTS

Part Ⅰ . Executive summary

1. PPWR 개요 및 단계별 시행일정
2. 화장품 산업의 주요 대응 이슈
3. 화장품 산업 대응 사례

Part Ⅱ. PPWR 적용요건과 화장품 산업 대응

1. 적용대상 및 포장 범위
2. PPWR 적용 개시와 우선 대응사항
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Part Ⅲ. TD·DoC 작성 실무

1. TD와 DoC의 역할
2. TD·DoC 작성 안내

Part Ⅰ.

Executive summary

PPWR 대응의 출발점은 모든 화장품 포장을 즉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요건을 입증할 문서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화장품 기업은 자사의 경제주체상 기본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포장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합성 입증 및 문서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후 확정되는 재활용 설계·산정·표식 기준은 기존 포장정보와 기술문서에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품 기업은 다수의 구성요소와 복합재료, 브랜드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공급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PPWR 개요 및 단계별 시행일정

1.1 PPWR의 도입과 적용 범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하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5년 1월 22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해 2월 11일 발효되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PPWD는 일부 경과조항을 제외하고 같은 날 폐지된다.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을 통해 이행되었던 지침에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의 통일성과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PPWR은 소재와 원산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며, 포장의 설계·생산부터 시장 출시와 폐기물 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율한다. 포장의 우려물질,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퇴비화 가능성, 최소화 및 재사용 가능성에 관한 지속가능성 요구사항뿐 아니라 표식, 경제주체의 의무, 적합성평가 및 TD·DoC 관리체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수거·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PPWR 주요 조항

PPWR 적합성 평가 관련 요구사항[1)]

구분	주요 조항		
(제2장)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제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제10조: 포장 최소화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3장) 표식 및 정보 제공	제12조: 포장의 표식	제13조: 포장폐기물 수거를 위한 폐기물 용기의 표식 제14조: 환경 관련 표시·광고	
(제4장) 일반 의무	제15조: 생산자의 의무 제16조: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제17조: 대리인 제18조: 수입자의 의무 제19조: 유통자의 의무	제20조: 이행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1조: 생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제22조: 경제 주체의 신원 확인 제23조: 포장폐기물 관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제5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경제주체의 의무	제24조: 과대포장 관련 의무 제25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에 관한 제한 제2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과 관련된 의무 제27조: 재사용 시스템과 관련된 의무 제28조: 리필 관련 의무 제29조: 재사용 목표	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제31조: 관할 당국에 대한 재사용 목표 관련 보고 제32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에 대한 리필 의무 제33조: 테이크아웃 음료나 식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재사용 선택지 제공 의무	
(제7장) 포장의 적합성	제35조: 시험, 측정 및 산정 방법 제36조: 적합성 추정 제37조: 공통 사양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제8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40조: 관할 당국, 제41조: 조기 경고 보고서 제42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방지 대책 제43조: 포장폐기물 방지 제44조: 제조자 등록부 제45조: 제조자 책임 확대 제46조: 제조자 책임조직	제47조: 제조자 책임 확대 의무의 이행 허가 제48조: 회수 및 수거 시스템 제49조: 의무적 수거 제50조: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제51조: 재사용과 리필 제52조: 재활용 목표·재활용 촉진	제53조: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제54조: 재사용을 포함한 재활용 목표 달성 실적의 산정 규정 제55조: 포장폐기물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제56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제57조: 포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1) 생산자(Manufacturer)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용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입증하고, 적합성 선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1. PPWR 개요 및 단계별 시행일정

1.2 단계별 시행 일정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원료 최소 함량 및 조화표식처럼 후속법령이 필요한 요건은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원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일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후속법령 발효일과 연동되는 요건은 2030년 1월 1일을 확정 적용일로 단정하지 않고 조건부 일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PPWR 단계별 시행 일정

법적 적용 · 기업 준수사항		EU 세부 기준 마련 · 제도 검토
주요 규정 적용 시작 및 시장 출시 요건 강화 • (5조) 우려물질 최소화·4대 중금속 요건 적용 • (6조) 재활용 가능성 과도기 적용 (EN 13430 기준 활용) • (11조) 재사용 가능 포장 요건 충족(해당 시) ***'26년 8월 우선 대응: 적합성 입증체계 구축***	2026	• (9조) 산업·가정용 퇴비화 포장 조화표준 개발 요청 • (12조) 조화표식 형식 및 포장 재질 식별방법 이행법령 • (7조) PCR 산정·검증방법 및 제3국 동등성 기준 • (5조) 포장 우려물질 보고서 작성 (위원회·ECHA)
	2027	• (10조) 포장 최소화 측정방법 조화표준 개발 요청 • (11조) 재사용 포장 최소 순환주기 횟수 위임법률
주요 규정 적용 - 퇴비화 및 조화표식 적용 • (9조) 특정 포장 유형의 퇴비화 기준 적용 • (12조) 재료구성 조화 표식 적용[1]	2028	• (6조) 재활용 설계(DfR) 기준 및 재활용성 등급(A·B·C) 위임법령 • (7조) 특정 포장 예외 필요성 검토 • (8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 기술·환경성 검토
주요 규정 적용- 재활용 원료 함량 및 디지털 정보 제공 • (7조) PCR 함량 산정 및 검증 방법 공식 적용[1] • (12조) 재사용가능 포장표식·QR 코드 등 디지털 정보 제공[2]	2029	
포장 설계·재활용 원료·최소화 요건 본격화 • (6조) DfR A,B,C 등급 적용(C등급 미만 시장 출시제한)[1] • (7조) PCR 최소 함량 적용[3] • (10조) 포장 중량 및 부피 최소화 적용	2030	• (6조) 대규모 재활용 평가방법 이행법률 마련 • (12조) 우려물질 디지털 표시방법 마련 • (5조)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재검토
	2032	• (7조) '30년 PCR 이행 및 '40년 목표 적정성 검토
	2033	• (5조) 우려물질 관리와 재활용 가능 설계의 연계효과 평가
• (6조) 대규모 재활용 요건 적용[4]	2035	• (6조) 재활용 가능성 적용 예외 및 대규모 재활용 기준치 검토
재활용 가능성 기준 강화 • (6조) DfR A,B 등급 적용(B등급 미만 시장 출시제한)	2038	
재생원료 최소 함량기준 강화 • (7조) PCR 최소 함량기준 강화	2040	

1) 이행법률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
2) 이행법률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날
3) 이행법률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
4) 이행법률 발효 후 5년 중 늦은 날

2. 화장품 산업의 주요 대응 이슈

화장품 포장은 내용물의 수용과 보호라는 기본 기능뿐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 사용 편의성 및 소비자의 감성적 경험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프리미엄 화장품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차별화된 사용감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재질의 용기 · 캡 · 펌프 · 실링재 · 라벨 · 슬리브 · 장식 부품을 결합하거나, 특수 코팅 · 인쇄 및 다중 포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군과 브랜드별로 포장 사양이 다양하고 제품 교체 주기도 짧다는 점도 PPWR 대응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포장 특성은 적합성평가의 출발점인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의 식별을 어렵게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구성요소의 기능, 결합 방식 및 소비자의 사용·폐기 과정에 따라 주요 본체, 통합형 구성요소 또는 분리형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항별 평가 및 입증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BOM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별 기능 · 재질 · 중량 · 소재층 · 분리 가능성 · 인쇄 · 코팅 및 PCR 함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디자인과 PPWR 요구사항 간의 조정도 주요 과제다. 화장품 포장에 사용되는 복합재료, 금속 스프링, 장식 부품, 특수 코팅 및 대형 단상자 등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인 동시에 재활용 공정에서 선별과 재활용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중량과 부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재활용 가능 설계와 포장 최소화 요건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심미성이나 마케팅 목적만으로 이러한 포장 사양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PPWR 적용 초기에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구성과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조항별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체계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이후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포장 최소화에 관한 세부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 맞춰 소재 단순화, 구성요소의 분리 용이성 개선 및 불필요한 포장 축소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브랜드 정체성과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순환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포장 설계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PPWR 대응 이슈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 존재**

화장품 포장의 특성	PPWR 관점의 리스크
다중재료·복합 구성요소 • 포장 단위의 본체에 플라스틱·금속 등 다수 부품 결합	**재활용 가능성 저하 가능성** • 복합 구성요소, 코팅·접착제 등이 향후 재활용설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有
데코레이션·고급화 • 증착 · 코팅 · 메탈 장식 · 이중벽 구조 유지	**재활용성 및 포장 최소화와의 충돌** • 마케팅·소비자 수용성만으로 추가 중량·부피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소형 포장·제한된 표시 면적 • 립스틱·색조 아이 메이크업 등 작은 포장 면적	**표식·정보관리 부담** • 조화된 표식, 언어, 온라인 판매정보 및 디지털 정보관리 필요
다수 부자재 및 분산된 공급망 • 용기·캡·펌프·라벨·단상자별 상이한 공급자	**증빙 확보 범위 확대** • 생산자가 필요한 재료·시험·설계 데이터를 단독으로 보유하기 어려움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튜브·리필용기	**재활용 원료 적용과 제품 안전성의 동시 고려** • 2030년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가능성

3. 화장품 산업 대응 사례

3.1 글로벌 뷰티 · 퍼스널케어 기업의 순환형 포장 전환 전략

주요 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기업은 PPWR 제정 이전부터 기존 포장규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플라스틱 감축정책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자발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고려하여 포장재 사용량과 버진 플라스틱 감축, 재생원료 확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DfR) 및 리필·재사용 모델을 추진해 왔다.

기업별 목표의 적용범위와 산정방법은 상이하지만, 신규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폐기단계의 선별·재활용을 고려하여 포장을 설계한다는 공통적인 방향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업은 복합재질·연질 포장의 기술적 한계와 국가별 재활용 인프라의 차이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포장전략은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포장 유형별 DfR 적용률과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PCR) 함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PPWR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목표뿐 아니라 실제 포장 사양과 공급망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포장별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기업의 순환형 포장 목표 및 이행 현황

● **버진 플라스틱 감축**

글로벌 기업	FY25 추진현황	주요 목표
L'ORÉAL	2019년 대비 37% 감축	2030년까지 50% 감축
Unilever	2019년 대비 29% 감축	2028년까지 40% 감축
L'OCCITANE EN PROVENCE	정량실적 별도 미공시	2026년까지 30%, 2028년까지 40% 감축

● **재생원료 및 대체소재 확대**

글로벌 기업	FY25 추진현황	주요 목표
L'ORÉAL	재생·바이오 기반 포장재 44%	2030년까지 50%
Unilever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PCR) 25%	2025년 목표 달성, 후속 정량목표 미공시
L'OCCITANE EN PROVENCE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PCR) 9%	2026까지 20%, 2031까지 40%
Beiersdorf	재생 플라스틱 30%	2030년까지 재생·재생가능 플라스틱 50%

● **재활용 가능 설계 및 재사용·퇴비화 가능 포장 확대**

글로벌 기업	FY25 추진현황	주요 목표
L'ORÉAL	리필·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 설계 확대	비교 가능한 중장기 정량목표 미공시
Unilever	재사용·재활용·퇴비화 가능 비율: 경질 플라스틱 75%, 연질 플라스틱 15%	경질 플라스틱 포장 2030년 100%, 연질 플라스틱 포장 2035년 100%
L'OCCITANE EN PROVENCE	재활용·재사용 가능 플라스틱 포장 27%	2026까지 재활용·재사용·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 100%
Beiersdorf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82%, 실제 재활용 가능 비율 78%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DfR 적용률 90% 초과

1) L'Oréal, *2025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4.6.4.1 "L'Oréal for the Future ambitions for the circular economy," p.232.
2) L'OCCITANE Group, *ESG Report FY2025*, pp.51–52
3) Beiersdorf AG, *Annual Report 2025*, "ESRS E5 – Resource Use and Circular Economy," pp.99–100
4) Unilever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pp.30, 34.

3. 화장품 산업 대응 사례

3.2 PPWR을 고려한 구체적 대응 사례

PPWR의 일반 적용을 앞두고 있으나, 공개자료를 통해 화장품 기업이 특정 포장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고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재활용 가능성 평가방법 등 일부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 중이며, PPWR이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의 보관 및 관계 당국 요청 시 제출을 요구할 뿐 일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개사례 확인의 한계로 작용한다.

다음은 PPWR 준수가 입증된 사례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포장 재료의 변경과 회수·세척·재충전을 포함한 재사용 체계의 운영 사례다. 각 사례의 적용범위와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제품에 적용할 때에는 최종 포장 단위에 대한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하다.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컴팩트 포장 재료 변경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SUQQU

기업 · 브랜드 소개

✓ SUQQU는 Kao그룹 계열의 일본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Eastman은 화장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를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SUQQU 컴팩트에 적용된 코폴리에스터를 공급**함.[1)]

포장 재료 변경	세팅 파우더 컴팩트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ABS에서 Eastman의 Cristal One 코폴리에스터로 전환함.
기능 및 재활용성 고려	프레스티지 포장에 필요한 광택·내구성·낙하충격 성능을 유지하면서 PET 재활용 흐름과의 호환성을 고려함.
PPWR 연계	Eastman은 해당 재료가 APR과 RecyClass에서 RIC1 흐름과의 호환성을 인정받았으며, SUQQU가 컴팩트 설계 시 PPWR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함.

보증금 기반 재사용 가능한 화장품 포장 운영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SPEICK NATURKOSMETIK

기업 · 브랜드 소개

✓ 1928년 설립된 독일의 자연화장품 기업으로, 비누·스킨케어·보디케어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Organic 3.0 제품군에는 샤워젤과 보디로션 등이 포함되며, 일부 제품에 독일의 zerooo 재사용 체계 적용함.[2)]

재사용 포장 적용	Organic 3.0 보디로션과 샤워젤에 PET 본체, PP 마개 및 세척 가능한 PE 라벨로 구성된 300㎖ 재사용 용기를 적용하고 0.50유로 보증금을 부과함.
회수 · 재충전 체계	참여 매장과 보증금 반환기를 통해 용기를 회수하고, 추적코드로 관리하여 세척 후 최초 충전기업에서 최대 10회까지 재충전함.
PPWR 연계	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 설계와 회수·세척·재충전 체계를 운영하고, 재사용이 종료된 용기는 재활용 단계로 전환함

1) Eastman, "SUQQU launches sustainable makeup compact with Eastman Cristal™ One," 2025.5.13.
2) Speick Naturkosmetik, "Organic 3.0 ab sofort in der PET-Mehrwegpfandflasche," 2024.10.7.; "Organic 3.0," 2026.7.25. 확인.

Part II.

PPWR 적용요건과 화장품 산업 대응

PPWR 대응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물품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조항별 적용시점에 따라 현재 평가할 요건, 해당 포장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 및 후속기준이 마련된 뒤 평가할 요건을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문서 의무를 우선 확인하고, 향후 확정되는 설계·산정·표식 기준을 기존 포장정보와 기술문서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적용 대상 및 포장 범위

1.1 적용 대상과 포장의 판단

PPWR은 사용된 재료와 원산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도 포장된 상태로 EU 시장에 출시되면 적용대상이 되며,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뿐만 아니라 캡·펌프·실링재·라벨·단상자 및 운송 포장 등도 기능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

PPWR상 포장은 제품을 수용·보호·취급·운송 또는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포장 여부는 제3조의 정의와 부속서 I 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물품이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지와 포장에 통합된 구성요소 또는 부속 요소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제품의 전 수명 동안 제품을 수용·지지·보존하는 데 필요하고,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도록 의도된 물품은 포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용기 마개의 일부로 결합된 마스카라 브러시는 PPWR 부속서 I 에서 포장에 해당하는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포장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를 설정하고, 포장 단위의 본체와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를 식별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한 물리적 분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운송·선별 및 폐기 과정에서 각 구성요소가 실제로 분리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의 식별 결과는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이하 “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EU 적합성 선언(이하 “DoC”,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작성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평가범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PWR상 포장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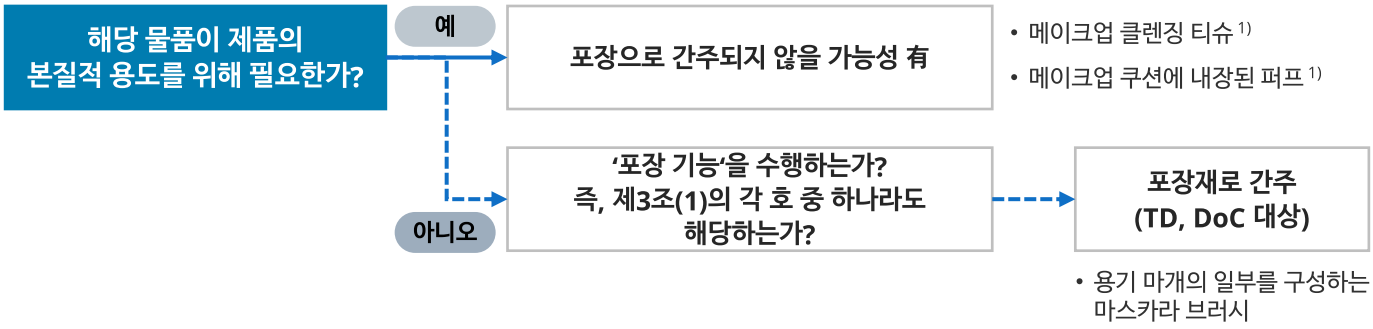

1.2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의 설정

포장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 단위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다. 판매포장뿐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폐기되는 개별 묶음 포장 또는 운송 포장도 각각 포장 단위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포장 단위는 포장 단위의 본체와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통합형 구성요소는 포장 단위의 기능에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본체와 동시에 폐기되는 부분이다. 분리형 구성요소는 본체와 완전히·영구적으로 분리되어 일반적으로 본체보다 먼저 또는 별도로 폐기되는 부분이며, 운송이나 분류 과정에서 기계적 충격만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크림 포장이 본체 용기, 캡 및 실링재로 구성된 경우 본체 용기는 내용물을 직접 수용·보호하는 주요 부분이 된다. 캡은 사용 중 열고 닫더라도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완전히·영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와 함께 폐기되므로 통합형 구성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최초 사용 시 완전히 제거되어 별도로 폐기되는 실링재는 분리형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구분은 결합 구조와 사용·운송·선별·폐기 방식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는 전체 포장 단위를 대상으로 하되, 세부 평가범위는 조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제6조는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구성요소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7조는 플라스틱 구성요소의 재료·중량 및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따라서 최초 단계에서 설정한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가 조항별 평가와 기술문서 전체의 기준점이 된다.

1) PPWR상 포장의 판단에서 제시한 사례는 PPWR 부속서 I 에 직접 명시된 사례가 아니라, 제3조의 포장 정의를 화장품에 적용한 해석 예시다.

1. 적용 대상 및 포장 범위

1.3 포장 종류와 조항별 평가범위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설정한 후에는 포장 카테고리, 주요 포장 재료, 포장 유형 및 포장 형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속서 II의 '포장 유형'은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재료·설계 유형에 가까운 반면, 부속서 VII에서는 동일한 재료·공정·장비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양으로 생산되는 적합성 선언 대상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포장의 용도와 제공 방식에 따라 판매포장·묶음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서비스 포장으로 구분하고, 접촉 민감성·복합·일회용 포장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 결과에 따라 조항별 평가대상과 적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술문서에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포장 종류

운송포장

- 다수의 판매 단위나 묶음을 운송하기 위한 포장
- 운송 중 물리적 손상 방지 및 취급 편의성 확보가 주목적인 포장
-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 미포함
- **전자상거래 포장과 달리, 12(1)의 재료 구성에 관한 포장 표식 의무 제외**

전자상거래 포장

- 온라인 판매 또는 기타 형태의 원거리 판매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 포장**
- **운송포장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나, 목적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전달**하는데 있음

묶음포장

- 매장 내 다수 판매 단위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고안된 포장
- 유통·진열의 편의를 제공하되, 제품 특성 훼손 없이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고안된 포장

판매 포장

- 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포장을 하나의 판매 단위로 제공하도록 고안된 포장**
- **제조·충전 단계에서 미리 채워져 상품과 함께 출고**
- 예) 화장품 용기, 단상자 등
- **판매 포장에 내용물을 채우는 화장품 브랜드사가 생산자(Manufacturer)로서 DoC/TD 책임 부담**[1)]

서비스 포장

- **판매 시점에서 제품을 담아 제공하기 위한 포장용으로 고안되고 의도된 물품**
- **사전에 빈 상태로 공급**
- 예) 쇼핑백, 샘플용기, 포장리본 등
- **해당 포장의 제조한 업체가 DoC/TD 책임 부담**[1)]
- 상표가 명확히 부착된 경우, 상표 소유자(사용자)를 Manufacturer로 간주

접촉 민감성 포장

복합 포장

- **손으로 분리할 수 없는 2개 이상의 재료가 결합된 포장**
- 단일 재료가 전체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및 표면 처리재(라벨, 페인트, 인쇄 잉크 등)는 복합재질 분류에서 제외

일회용 포장

혁신적 포장

(심각한) 위험이 있는 포장

(가정) 퇴비화 가능 포장

테이크아웃 포장, 1차 생산포장, 식품접촉 포장

1) EC 2. Definition of a manufacturer of packaging

2. PPWR 적용 개시와 우선 대응사항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모든 세부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에 우선 대응하여야 할 사항은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관한 제5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일반원칙을 정한 제6조제1항,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관한 제11조 및 경제주체의 기본 의무다. 다만 제11조는 해당 포장을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5조는 우려 물질의 최소화와 중금속 함량 제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지만, 재활용 친화적 설계 기준과 재활용 가능성 등급은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률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 후속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PPWD와 관련 조화표준인 EN 13430:2004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PPWR상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작성은 아직 요구되지 않는다.[1)]

또한 생산자는 제15조에 따라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EU 적합성 선언(DoC)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6년에는 제5조와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를 우선 평가·문서화하고, 제6조는 과도기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포장 카테고리와 구성요소별 재료·중량·결합 구조 등 후속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적용되는 제6조의 재활용 친화적 설계 및 등급기준, 제7조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제9조의 퇴비화 가능성, 제10조의 포장 최소화 및 제12조의 표식은 각 조항에서 정한 적용일과 후속법률의 마련 시점을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요구사항	주요 적용시점	대응 구분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 우려 물질 최소화 •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총 농도 100㎎/㎏ 이하 관리	2026.8.12	**우선 대응**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 (재활용 가능 일반원칙 적용 및 기존 PPWD · EN13430:2004 준수[1)])	2026.8.12	**우선 대응**
	• 재활용 친화적 설계 기준 및 재활용 가능성 등급 (A·B·C) 적용 (C등급 미만 포장 출시 제한)	2030년 이후	**중장기 대응**
	• 대규모 재활용 요건 적용	2035년 이후[2)]	
	• 재활용 요건 강화 (A·B등급만 허용)	2038년 이후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PET 30%, 기타 플라스틱 10%)	2030년 이후	**중장기 대응**
	•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강화 (PET 50%, PET 이외 플라스틱 25%)	2040년 강화	
제8조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의 기술 발전 및 환경적 성능 검토 및 필요 시 후속 입법안 제시	2028.2.12[3)] *(집행위원회 검토)*	**기준 모니터링**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 특정 포장의 산업적 퇴비화 기준 준수 및 그 밖의 포장에 대한 재료 재활용 설계	2028.2.12	**중장기 대응**
제10조 포장 최소화	•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외관상 부피만 늘리는 포장 금지	2030.1.1	**중장기 대응**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 반복 사용·재충전·재가공이 가능한 설계, 안전·위생 및 수명 종료 후 재활용 요건 충족 (재사용 시스템 관련 의무는 제26조와 연계)	2025.2.11 이후[4)]	**해당 시 우선 대응**
제12조 포장의 표식	• 재료 구성에 관한 조화된 표식 적용	2028.8.12[5)]	**중장기 대응**
	•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관한 조화된 표식 적용	2029.2.12[6)]	

1) European Commission, PPWR Guidance, C/2026/3084, Section 6, 2026.6.10.
2) 제6조제2항(b)에 따른 대규모 재활용 요건은 2035년 1월 1일 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관련 이행법률 발효 후 5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됨. 2035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재활용 기준의 검토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제8조는 현 단계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건이나 사용목표 등에 관한 후속 입법안이 제시될 수 있음.
4) 제11조는 2025년 2월 1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적용된다. 다만 관계 당국의 준수 여부 확인은 PPWR 일반 적용일인 2026년 8월 12일부터 가능함.
5)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률 발효 후 24개월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적용
6) 2029년 2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률 발효 후 30개월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적용

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링크

PPWR은 제71조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조항별 적용일과 후속기준의 마련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기업이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6년 우선 대응요건과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중장기 요건으로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요구사항과 주요 확인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며, 적용대상·예외사항·적합성 입증자료 및 세부 작성방법은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단기] 2026년 우선 대응 요건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제5조 대응을 위해서는 실제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구성요소별 물질정보를 확인하고, 우려 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였는지와 4대 중금속 농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공급업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실제 포장의 재료·색상·인쇄·코팅 및 후가공 사양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5조 제1항	• 포장 재료와 구성요소에 포함된 우려 물질의 존재와 농도 최소화	모든 포장
제5조 제4항	•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총 농도 100㎎/㎏ 이하	모든 포장 및 구성요소
제5조 제5항	• PFAS 농도 제한기준 충족	식품접촉포장에 한정

Point

- ☑ 화장품 포장재의 주된 재료뿐만 아니라 첨가제, 안료, 인쇄 잉크, 코팅·바니시 및 접착제 등 포장 재료 또는 포장 구성요소의 실제 물질 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1)]
- ☑ 또한, 해당 물질이 PPWR상 우려 물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REACH[2)] 및 POPs 3) 규정 등 다른 EU 화학물질 법령에 따른 제한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6조. 재활용 가능 포장

제6조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와 포장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본체와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별 재료·중량·결합 구조 및 재활용 저해요인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제6조제1항의 재활용 가능 일반원칙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재활용 친화적 설계 기준과 재활용 가능성 등급은 관련 위임법률의 마련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재 요건과 후속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6조 제1항	•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	모든 포장
제6조 제2항·제4항	• 재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재활용 친화적 설계 기준 및 재활용 가능성 등급 적용	포장 카테고리별 포장 및 구성요소
제6조 제2항·제5항	• 분리수거·선별이 가능하고 다른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대규모로 재활용될 것	모든 포장
제6조 제3항	• 2030년 이후 A·B·C등급, 2038년부터 A·B등급 포장만 시장 출시 허용	모든 포장

Point

- ☑ 2026년에는 제6조제1항의 재활용 가능 일반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활용 친화적 설계 요건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PPWD 및 EN 13430:2004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 ☑ 제6조제4항의 위임법률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제6조에 대한 PPWR상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음. 다만 위임법률 발효 후 확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문서화할 수 있도록 포장 카테고리·주요 포장 재료, 구성요소별 재료·중량·결합 구조와 라벨·잉크·접착제·코팅·금속 부품 등 재활용 저해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제5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 (EU) 2024/1781)」 제2조제27호.
2)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 REACH)」 부속서 XVII.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1, POPs Regulation)」 제3조 및 부속서 I

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단기] 2026년 우선 대응 요건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11조는 모든 화장품 포장을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포장을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분류하는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설계·성능 기준을 규정한다. 해당 포장은 동일한 포장 단위가 본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여러 순환주기에 걸쳐 반복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재충전·재가공 과정에서도 제품의 품질·안전 및 위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11조 제1항(a)·(b)	• 여러 차례 재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출시하고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순환주기 수행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11조 제1항(c)~(h)	• 소비자 건강·안전·위생 유지, 손상 없이 비우기·재충전·재적재·재가공 가능, 정보 제공 및 안전한 취급 보장	
제11조 제1항(i)	• 수명 종료 후 제6조의 재활용 가능한 포장 요건 충족	
제11조 제3항	• 제11조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부속서 VII의 기술정보로 입증	

Point

- ☑ 외용기를 보유하면서 일회용 리필제품을 교체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상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판단할 수 없음.
- ☑ 동일한 포장 단위가 회수 · 재가공 · 재충전되어 반복 사용되는지와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재사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일반적인 일회용 화장품 포장은 제11조의 비적용 사유를 기록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주기 · 내구성 · 세척 · 위생 · 추적성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링크

[장기] 2028년 이후 대응 요건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제7조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 단위에 포함된 플라스틱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접촉 민감성 포장인지와 PET가 주요 재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은 개별 포장 단위마다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유형·형식별로 제조시설 및 연도별 평균을 산정하므로, 재료·중량·제조시설·생산연도 및 소비 후 재활용 원료의 출처와 투입량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7조제1항(a)·제2항(a)	• 접촉 민감성 PET 포장의 소비 후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2030년 30%, 2040년 50%	PET가 주요 재료인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제7조제1항(b)·제2항(b)	• 접촉 민감성 PET 이외 플라스틱 포장의 소비 후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2030년 10%, 2040년 25%	PET 이외 재료가 주요 재료인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제7조제1항(d)·제2항(d)	•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의 소비 후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적용: 2030년 35%, 2040년 65%	접촉 민감성 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
제7조제5항(b)	• 포장 단위 총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최소 비율 적용 제외	해당 플라스틱 부분

Point

- ☑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포장은 접촉 민감성 포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용기·캡·펌프 등 각 플라스틱 부분의 재료와 용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 제7조의 재활용 원료는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원료를 의미하므로, 바이오 기반 원료나 공정 중 발생한 플라스틱 부산물을 동일하게 산정해서는 안 됨. 또한,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활용 원료 함량자료뿐 아니라 제조시설 · 생산연도 · 원료 출처 및 추적성 자료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

제9조는 모든 포장을 퇴비화 가능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다. 특정 포장에는 산업적으로 통제된 조건의 퇴비화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포장은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제6조에 따라 재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화장품 기업은 자사 포장이 EU 공통 퇴비화 대상 또는 회원국 추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9조 제1항	• 산업적으로 통제된 조건의 퇴비화 기준 준수 및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가정 퇴비화 기준 준수	음료용 투과성 백·일부 1회분 포장 및 과일·채소 부착 라벨
제9조 제2항	• 회원국의 수거·처리 기반이 갖추어진 경우 특정 포장에 추가 퇴비화 요건 적용 가능	회원국이 별도로 지정한 포장
제9조 제3항	• 그 밖의 포장은 다른 폐기물 흐름의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료 재활용이 가능하게 설계	제9조 제1항·제2항 이외의 포장
제9조 제4항	• 제9조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부속서 VII의 기술정보로 입증	제9조 적용 포장

Point

- ☑ 일반적인 화장품 용기·튜브·캡·펌프·파우치 및 단상자는 통상 제9조제1항의 EU 공통 퇴비화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화장품 포장에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제6조에 따른 재료 재활용 설계와 다른 폐기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출 대상 회원국이 추가 퇴비화 요건을 운영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장기] 2028년 이후 대응 요건

제10조. 포장 최소화

제10조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의 중량과 부피가 제품의 보호·안전·위생 및 사용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 평가하고, 더 줄일 수 없는 이유를 성능 기준과 시험·설계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화장품 포장의 심미성이나 브랜드 차별화를 목적으로 적용된 이중벽·대형 단상자·불필요한 층과 장식 요소 등은 포장 최소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10조 제1항	•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제10조 제2항	• 부속서 IV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외관상 부피만 증가시키는 포장의 시장 출시 제한	이중벽·거짓 바닥·불필요한 층 등이 포함된 포장
제10조 제4항	• 최소 중량·부피 평가결과와 추가 감축을 제한하는 설계요건을 기술문서로 입증	제10조 적용 포장

Point

- ☑ 화장품 포장의 최소화 평가 시 제품 보호, 포장 제조공정, 물류, 포장 기능, 정보 제공, 위생·안전 및 법적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포장을 더 줄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 마케팅이나 소비자 수용성만으로 초과 포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중벽·대형 단상자·불필요한 완충재와 장식 요소를 우선 식별할 필요가 있음. 제10조의 판매포장 최소화는 제24조의 묶음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에 적용되는 빈 공간 비율 제한과 구분하여야 함.

제12조. 포장의 표식

제12조 대응을 위해서는 포장과 구성요소별 재료정보를 정리하고, 향후 확정되는 조화된 표식의 형식과 적용시점에 따라 포장 아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재료 구성 표식과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표식은 적용대상과 적용일이 서로 다르며, 재활용 원료 또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을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후속 이행법률에서 정한 형식과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근거	주요 요구사항	적용 범위
제12조 제1항	•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료 구성의 조화된 표식 적용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일반 운송 포장과 보증금 반환 시스템 대상 포장은 제외되나 전자상거래 포장은 적용)*
제12조 제2항	• 재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식 및 재사용 시스템·수거지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 또는 디지털 데이터 매체 적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
제12조 제3항	•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에 대한 표식·QR 코드 적용 제외	해당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
제12조 제4항	• 재활용 원료 또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조화된 형식과 산정방법 준수	해당 정보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포장
제12조 제5항	• 표식과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인쇄 또는 각인	제12조 적용 포장

Point

- ☑ 재료 구성에 관한 EU 조화표식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률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조화표식은 2029년 2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률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됨.
- ☑ 적용 전에는 현행 회원국별 요건에 따라 기존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적용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제도 관련 표식을 제외한 국가별 표식을 병기할 수 없음. 이에 재료정보·표식 공간·아트워크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이행법률 확정 후 최종 형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재활용 관련 문구는 제14조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 요건도 함께 확인하여야 함.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국가별

독일

PPWR 이행법으로서 포장법(VerpackDG) 발효

독일은 2026년 8월 12일 PPWR 시행에 발맞춰 기존 자국 포장법(VerpackG)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포장이행법 VerpackDG를 발효한다. 이 법은 PPWR 체계와 독일의 기존 포장폐기물 관리 제도를 매끄럽게 연계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참의원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 17일에 공식 공포되었다.[1] PPWR이 포장재의 재활용성 설계, 최소 재생원료(PCR) 함량 등 제품의 규격과 기준을 통일한다면, VerpackDG는 이 기준을 어긴 기업을 독일 당국이 어떻게 적발하고, 분담금을 걷으며,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집행 체계를 규정한다. VerpackDG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관리 시스템(ZSVR·LUCID) 유지 및 EPR 의무 대상 전면 확대

- 기존의 중앙포장재등록재단(ZSVR), 이중회수 시스템(Dual system*) 및 LUCID 등록부 체계 유지
- 기존 규제 면제 대상이었던 B2B(산업용, 수송용, 다회용 등) 포장재 역시 EPR 이행 승인 획득 필요[2]
- 비 EU 기업이 독일 시장 진출 시에도 직접적 규제 적용 대상이며, 독일내 최초 유통자가 등록자에 해당[3]

*이중회수시스템: 독일의 포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으로 지자체가 일반 생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노란색 재활용봉투/수거함을 통해 민간 업체가 포장 폐기물만 별도로 수거하며, 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전액 운영됨

» 해외 직수출 기업의 지정대리인 임명 의무화

- 독일 영토 내에 사업장(지사)이 없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독일 최종 소비자(B2C 및 B2B)에게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해외 제조·유통사는 반드시 독일 현지에 기반을 둔 법적 지정대리인 선임해야 함
- 선임된 지정대리인은 LUCID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야 하며, 생산자를 대신해 EPR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 부담
- 신규 진입 기업은 8월 12일부터 즉각 적용되며, 기존 LUCID 등록 기업은 과도기 조항에 따라 2026년 11월 12일까지 지정대리인 등록을 완료해야 함. 이를 위반할 시 즉각적인 독일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됨.[4]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구비 및 보관

- 독일 시장에 포장재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PPWR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구비 및 보관
- 적합성 선언서는 독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당국에 요청에 따라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음 5)

» 재활용성 연계 에코 모듈레이션 가동 예정

- EPR 분담금을 재활용 설계 등급과 재생원료(PCR) 함량에 연동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 마련 예정

» 위반 시 벌금 및 제재

- EPR 시스템 미등록, LUCID 미등록 업체의 포장 출시 및 유통 등 법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20만 유로 벌금 부과
- 독일 자체 행정 기준에 관한 처벌은 2026년 8월 12일 즉각 시행되며, PPWR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벌금 및 행정처분 집행은 2027년 2월 12일부터 가동 [5]

1) Kein Zurück mehr beim VerpackDG: Was das neue Verpackungsrecht bedeutet, packaging journal. 2026.07.18
2) 독일 연방의회, PPWR 이행 법 'VerpackDG' 승인 – EU 중심 독일도 PPWR 대응과 검증 체계로, 올패키징. 2026.07.11
3) [독일] EU PPWR 적용을 앞둔 독일 내 반응 및 동향,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6.03.28
4) Foreign producers will require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from 12 August 2026 (1. Update), Das Verpackungsgesetz. 2026.07.01
5) PPWR und Verpackungsgesetz – Ein Überblick im Verpackungsrecht. ZDH(독일중앙수공업연합회).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국가별

프랑스

순환경제법(AGEC*) 주요 체계 유지 및 일부 PPWR과의 조정

프랑스는 2020년에 이미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하는 선도적인 순환경제법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럽연합 차원의 포장 규정인 PPWR이 제정되면서, 두 규제 간의 목표 수치나 이행 방식, 적용 시기 등이 상이해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중 규제로 인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유럽 규정과의 조화를 근거로 로비 활동을 전개했고, 환경 비영리 단체와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2026년 2월 중순 진행된 '유럽연합법 적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DDADUE법**)' 초안 심의에서 PPWR 도입에 따른 순환경제법 수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사용 금지, '30년까지 플라스틱 물병 사용량 50% 감축 등 순환경제법의 주요 내용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더불어 PPWR 기준을 상회하여 업계의 우려를 샀던 '2027년까지 포장재 10% 재사용' 목표 역시 그대로 고수되었다. 다만 '25년부터 폴리스티렌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은 PPWR 도입 일정과 맞추어 '30년으로 유예되었다. 이처럼 유럽 규정과의 조화를 근거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산업계의 거센 로비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환경제법을 약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프랑스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환경 규제 기조가 유지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자국법과 PPWR 간의 조정 과정은 완결 단계가 아니며, PPWR 제4조에서 원칙적으로 EU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수준의 요구사항을 유지 또는 도입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EU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의 현지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
** Loi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자체 분리배출 표시인 Triman 및 Info-Tri는 유지 후 EU 조화 표식 마련 후 대체 예정 1)

프랑스는 순환경제법(AGEC) 제정 이후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에 트리망(Triman) 로고와 분리배출 지침(Info-Tri)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프랑스 독자 규정이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34조를 위배하여 EU 단일시장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며, 프랑스가 지침(EU) 2015/1535에 따라 트리망의 기술 사양을 기술 규정초안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유럽 연합 차원의 공통 조화 표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표시 체계를 임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결국 프랑스 역시 향후 도입될 EU 조화 표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트리망 마킹 설비를 구축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표식이 인쇄되었는데, 2028년에 다시 EU 표준 규격으로 패키징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중 투자와 매몰 비용 발생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단계	날짜
(EC) 프랑스에 공식 통지 서한 발송	2023년 2월
(프랑스) 합리적 의견 제출	2024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	2025년 7월 17일
소송 접수에 대한 공고를 EU 관보에 게재	**2026년 5월 중순**

1) [프랑스] EU PPWR 적용을 앞둔 프랑스 내 반응 및 동향,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6.03.12.
2) The EU harmonised sorting label: where PPWR, the Triman and the national marks stand in 2026, EPR Representative, 2026.07.21.
3) European Commission initiates infringement procedure against France for Triman Logo, CRITICAL CATALYST. 2023.02.15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국가별

프랑스

프랑스 순환경제법 및 PPWR 조정 현황

	프랑스 순환경제법	PPWR	자국법 유지 여부
지리적 범위	프랑스	EU	–
시행일	2020년 발효 2040년까지 단계적 도입	2025년 발효 (2026년 8월 12일 적용) 2040년까지 단계적 도입	–
플라스틱 포장 규제	'4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시장 출시 단계적 중단 (~'25년 20%, ~'30년 50% 감축)	재활용 가능 설계에 초점 '30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금지* 및 점진적 감축을 요구 *호텔소형어메니티,신선과일·채소비닐포장등	유지
	'25년부터 폴리스티렌 사용금지	특정 재료의 금지보다 재활용 가능 설계 중심	PPWR 일정과 맞추어 '30.1.1로 유예[1)]
재사용	'27년까지 포장재 10%를 재사용	분야별로 '30년, '40년 단계적 목표 설정	유지[2), 3)]
분리배출 표시	프랑스 자체 라벨 Triman 사용	'28년 EU 공통의 조화라벨 적용	PPWR 일정에 맞춰 조화 레벨로 변경 예정

재생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한편 프랑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 및 산업용 포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EPR 수수료 에코 모듈레이션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버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하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는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EPR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PPWR의 에코모듈레이션은 차등 요금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프랑스 제도는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생 플라스틱의 중량에 비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제품군에는 EPR 규정 적용을 받는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이며, 포장을 포함해 전기 및 전자 장비, 장난감, 가구 등 제품도 포함된다.[4)]
- 포장재에 PCR(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재생 원료가 다른 EPR 흐름에서 유래한 경우 톤당 450유로, 동일한 EPR 흐름에서 유래한 경우 톤당 550유로를 지급하며, 재활용 기술 장벽이 가장 높은 식품 등급이나 접촉 민감성 포장재에 사용된 경우에는 톤당 1,000유로의 높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촉 민감성 포장은 26/27년 톤당 550유로의 전환 세율이 적용된다.
- 다만, 이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복합 소재 제품, 재활용을 저해하는 첨가제나 안료 및 코팅이 포함된 제품, 재활용 PVC 제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리적 요건으로서 수거부터 재생 원료 재통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프랑스 본토의 지리적 중심에서 반경 1,500km 이내, 혹은 유럽연합 영토 및 이에 상응하는 환경 표준을 갖춘 제3국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는 공정에 투입된 재생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에 대한 증빙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플라스틱의 수지 유형, 소비자 사용 후 출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증명하는 동시에 제3자 감사를 포함한 EPR 기관의 모니터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5) 6)]

1) France Lifts Styrenics Ban to Align with EU Packaging Regulation. Eumeps. 2025.04.08
2) Réduction des plastiques à usage unique : le Sénat sauvegarde les fondamentaux de la loi AGEC, Zerowaste France. 2026.02.19
3) Loi AGEC menacée : le Sénat recule sur le plastique, Recy.net. 2026.02.28
4) Eco-modulation in the EPR system in France – rules and obligations of manufacturers, Interzero Polska. 2026.01.01.
5) EU Obligations and Plastic Tax: The Example of France, rigk, 2025.11.07
6) France to Incentivise the Use of Domestically Recycled Plastics From 2026, Recoup, 2025.11.09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국가별

네덜란드

기존 포장관리령, EPR 제도와 연계성 강화

- 네덜란드는 포장 분야에서 생산자책임과 순환경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온 선도국으로, 이미 자체적인 포장관리령(Besluit beheer verpakkingen 2014)과 EPR 제도(Verpact, Afvalfonds Verpakkingen)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현재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IenW)는 PPWR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자국의 포장관리령을 개정·보완하고 있다. 전반적인 입법 방향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자국법을 기반으로 PPWR과의 정합성을 맞춰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 시장 내 포장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인간환경교통조사국(ILT)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 논의 중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1) 2)]

» 폐기물 소량 배출업체 EPR 부담금 면제 폐지

- 기존 연간 50톤 미만 배출업체에 적용되던 EPR 분담금 면제 제도를 PPWR에 맞춰 폐지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네덜란드 시장에 포장을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예외없이 포장 폐기물 관리 수수료 신고 및 납부 필요 (2026.08.12부터 적용)[3) 4)]

» 에코모듈레이션 요금 체계를 PPWR에 연계 조정 예정

- 네덜란드 내 EPR 실무를 담당하는 생산자책임기구인 Verpact는 이미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연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향후 PPWR 하위 법령에서 PCR 계산 방식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에코 모듈레이션 요금을 조정할 예정 [1)]

» 현지 대리인 지정 의무화

- 네덜란드 외 소재 해외 기업은 2026년 8월 12일까지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여 EPR 등록 및 데이터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4)]

1) [네덜란드] EU PPWR 적용을 앞둔 네덜란드 내 반응 및 동향,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6.04.07
2) PPWR Compliance in the Netherlands: Afvalfonds Verpakkingen, ILT & Dutch Packaging Rules, PPWR Connect. 2026.04
3) EPR Compliance for Packaging in the Netherlands | Guide and Checklist 2026, ecopv-eu. 2026
4) Netherlands EPR., lappa.

EU 회원국 8개국, PPWR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체코, 불가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EU 회원국 8개국은 6월 25일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PPWR에 대한 EC의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

» 회원국 공동 의견서 내용

1 법적 불확실성 심화	▪ 2026년 8월 12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실무 적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위임법·시행령 등 규정 적용을 위한 필수 하위 법령 미발표로 인해 법적 공백 상태 발생
2 통일된 지침 결여 및 시장 파편화	▪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과 통일된 방법론 부족 ▪ 회원국 별 자의적 규정 해석, 상이한 적용해 EU 단일 시장의 통합성을 해치고 교역 혼란 야기
3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	▪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기준 요구 ▪ 가구당 약 160유로 수준의 거시적 비용 부담 예상 (유럽위원회 영향 평가 기반의 추정) ▪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으로 중소기업 생존 기반 약화 우려
4 세부 기술· 검증 기준 모호	▪ 회원국별 포장 라벨링 요구 사항 상충 ▪ PFAS(과불화화합물) 유해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 결여
5 비효율 초래· 투자 위축	▪ 2026~2028년 잦은 포장 표식 규정 변경 예고로 중복 제작 및 이로 인한 비용 낭비 불가피 ▪ 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 인프라 투자 지연
6 기존 EPR 보고의무 유지	▪ Non-EU 기업의 무임승차 방지 및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국별 기존 EPR 보고 체계를 유지 주장

8개 회원국은 ①명확하고 통합된 일정표 제시, ②세부 시행기준 및 실무 가이드라인 조속 제공, ③회원국별 시장감시당국과 구체적 협의 착수를 요구

»명확하고 통합된 일정표 제시

✓ PPWR 관련 위임법, 시행령 규정 마련 및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일정표를 긴급히 제공할 것

»세부 시행기준 및 실무 가이드라인 조속 제공

✓ 기업들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석상의 모호함이 없는 명확한 하위 기술 표준, 추가 보완 FAQ, 위임 및 시행 법령을 신속히 확정해 제공할 것

»회원국별 시장감시당국과 구체적 협의 착수

✓ EU 전역의 공통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론 마련을 위해 회원국 각국의 시장감시당국과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대화를 진행할 것

1) [EU] 일부 EU 회원국, EU이사회에 PPWR 시행기준 명확화 등 촉구,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6.07.15
2) Italy and seven EU countries are calling on the Commission for “greater clarity” on the implementation of packaging rules, eunews, 2026.06.25

4.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산업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국별 자국법과 PPWR 간의 상충 지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과도기적 단계에 놓인 기업들은 EU 규정과 개별 회원국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자국법과 PPWR 모두 포장 공급망 전체의 순환경제 체계 강화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 따라서 전체 공급망을 아우르는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과 제품 설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일치한다. 결국, 포장의 구성요소를 PPWR 기준에 맞추어 재정렬하고 데이터 자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본질적인 과제는 변하지 않는 셈이다.
- 하지만 실제 업계 현장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개별 SKU(재고관리단위) 수준이 아닌 거시적인 제품 카테고리 단계에서 이제 막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한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장 인벤토리 구축, 공급망 데이터 수집, 규제 대응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등의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이제 막 확립해 나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당장 시행이 임박한 조항 위주로 단기적인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만이 기존의 제품 혁신 프로세스 내에 포장 재설계를 통합하여 규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더해, 현재까지 발표된 유럽집행위원회(EC)의 가이던스마저 명확한 법률 해석에 한계를 보이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일례로 제29조의 재사용 목표 규정을 보면, 팔레트, 고정용 랩, 스트랩 등을 포함한 운송 및 전자상거래용 판매 포장은 2030년 1월부터 포장 중량의 최소 4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가이던스와 FAQ에서는 팔레트 랩과 스트랩을 서로 다른 포장 형식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재사용 목표 준수율을 계산할 때는 이들을 함께 묶어 산정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해석상의 모호함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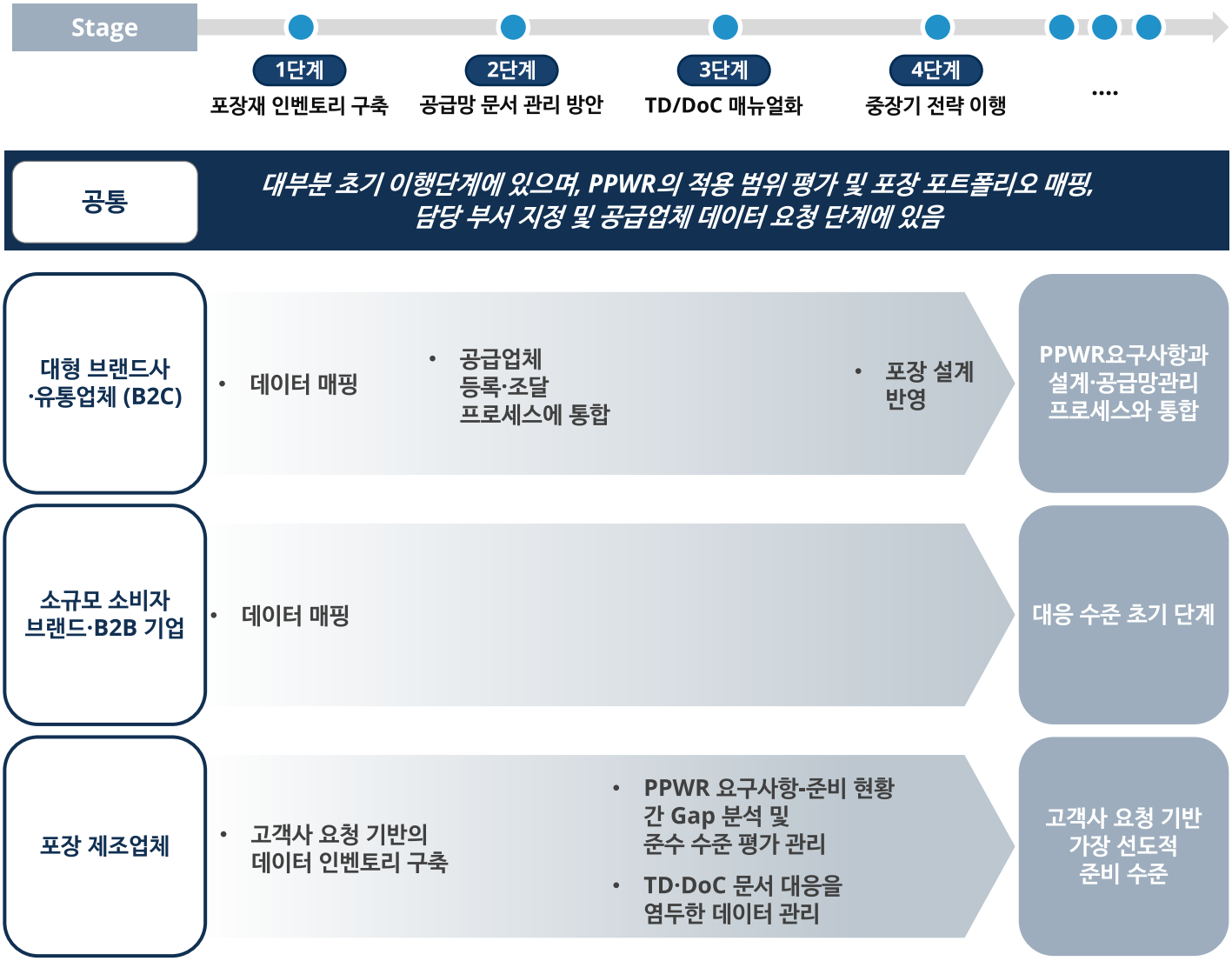

PPWR 본격 시행 전 유럽 현지 산업계의 주요 쟁점 및 진영별 입장

» 한편 PPWR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럽 현지 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6년 4월 29일, 식료품 대기업을 주축으로 PPWR의 세부조항의 모호성을 근거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럽위원회에 보냈으며, 이를 반박하는 또 다른 기업 그룹에서 PPWR 현안을 유지해야 하며,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우선순위임을 강조하는 서한을 다시금 EU 측에 제출

» 이는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한 그룹과 법적 공백으로 인해 기술적 병목 현상에 처해있는 그룹의 생존권 방어가 충돌하는 규제 과도기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유럽 내 혼란은 Non-EU 기업에게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가 시장 진입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

- 유럽 내 수입업자와 유통채널은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 입증 책임을 Non-EU 기업에 전가 가능성 → 유럽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제 대비 필요
- 규제 대응력이 거래 경쟁력으로 직결: 현지 수입업자들은 자체적 포장 데이터 정렬 및 규제 입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업체와 우선 거래 유지 및 체결 가능성 높음

구분	기업 그룹 A: 세부 기준 명확화 촉구	기업 그룹 B: 원안 고수 및 신속 이행
서한 발표 시기	2026년 4월 29일	2026년 6월 3일
주요 주체	• 코카콜라, 하이네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식료품계 소비자 브랜드 대기업 및 유리·포장재 기업 +130	• 200여 개 글로벌 대형 브랜드(IKEA, ALDI, Shell 등), 포장재 제조/재활용 선도기업 (Amcor, Mondi 등) • Plastics Recyclers Europe 주도
핵심 주장	*"명확한 실무 가이드라인 없이는 2026년 8월 시한을 맞출 수 없다."*	*"PPWR은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민주적 정당성과 기술적 견고성을 보장하고 있음"* *"합의된 PPWR 법안을 다시 재검토하지 말아야 하며, PPWR 시행령 및 위임법 등 하위법령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
요구 배경	• 법 적용이 임박함에도 핵심적인 하위 법령이 나오지 않아 규제 미준수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 선제적 투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 PPWR 기준에 맞춰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 자본의 보호 및 규제 환경 변화로 향후 장기적인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 저하
EC 요구 사항	• 시험 방법 및 정의가 공식 발표될때까지 식품접촉포장재 PFAS 제한에 관한 5(5)항 시행 연기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부속서 V) 목록 재검토, 묶음 상품에 관한 플라스틱 포장 적용 여부 명확화 • 재활용성 설계요건(제6조), 재활용 함량 목표(제7조), 재사용 목표(제29조) 및 분리수거 표식(제12조) 재검토	• 법안 원문 수정(Reopen) 반대 •지연되고 있는 하위 위임법을 원안의 틀 안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할 것

1) CEOs petition EU Commission to postpone enforcement of PPWR, Packaging Europe. 2026.04.30
2) Coalition of 200 companies urges EU Commission not to reopen the PPWR, Packaging Europe. 2026.06.03
3) PPWR: Industry Calls for Clarifications as August 2026 Deadline Approaches, CDX. 2026.06.15
4) PPWR: 200 Companies Tell the EU — Do Not Reopen, PPWR connect. 2026

Part Ⅲ.

TD·DoC 작성 실무

생산자(Manufacturer)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하여야 한다.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TD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한다. TD와 DoC는 별개의 문서이지만 선언대상 포장, 적용 요구사항 및 평가결과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시장 출시 후에도 포장 사양과 관련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TD와 DoC의 역할

생산자(Manufacturer)[1]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이하 'TD')에 기록하여야 한다.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TD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DoC')를 작성·서명한다.

TD는 포장의 구성과 사양, 적용 요구사항, 평가방법·결과 및 근거자료를 기록하여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다. DoC는 TD를 통해 적합성이 입증된 포장에 대하여 생산자가 그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다. 따라서 DoC는 TD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문서의 선언대상·포장정보·적용 요구사항 및 평가결과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TD와 DoC의 역할

구분	기술문서(TD)	EU 적합성선언서(DoC)
주요 역할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입증한 과정과 근거를 기록	TD를 근거로 생산자가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선언
법적 근거	제15조·제38조 및 부속서 Ⅶ	제15조·제39조 및 부속서 Ⅷ
주요 내용	포장 일반정보, 도면·BOM·재료, 구성과 작동, 적용 기술표준, 조항별 평가결과, 시험·공급망 자료	포장 식별정보, 생산자·대리인 정보, 선언대상, 적용 법규, 기술표준·기술사양, 발행정보 및 서명
작성 시점	시장 출시 전 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TD를 통해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된 후 작성
책임	생산자가 작성하고 적합성 입증자료를 관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고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
보관기간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 10년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 10년

Point

☑ **DoC는 제3자가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작성하는 적합성 선언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확인서는 적합성평가를 지원하는 자료이며, 실제 포장 사양과 자료를 대조하여 최종 적합성을 판단하는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음.**

1) PPWR은 Manufacturer와 Producer를 서로 다른 경제주체로 구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제처 번역에 따라 Manufacturer를 '생산자', Producer를 '제조자'로 표기한다. 생산자는 적합성평가와 TD·DoC 작성 책임을 부담하고, 제조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등록·보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

2. TD·DoC 작성 안내

PPWR 적합성 입증은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조항별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생산자(Manufacturer)는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하고,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는 포장의 재료·구조·중량 및 시험·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해당 자료가 실제 포장 사양에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수입자와 유통자는 포장이 EU 시장에 출시·유통되기 전에 각 경제주체에게 요구되는 적합성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TD·DoC의 기본 작성절차와 주요 작성항목을 제시하며, 세부 평가방법과 작성 사례는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PPWR 적합성 입증 및 TD·DoC 작성 절차

TD·DoC 작성은 생산자(Manufacturer)의 책임으로 수행되며, 공급자의 자료 제공과 수입자·유통자의 확인 절차가 연계된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험성적서와 확인자료는 적합성평가를 지원하지만, 최종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이에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합성 입증과 문서 작성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핵심만 요약하며, 상세 작성방법과 사례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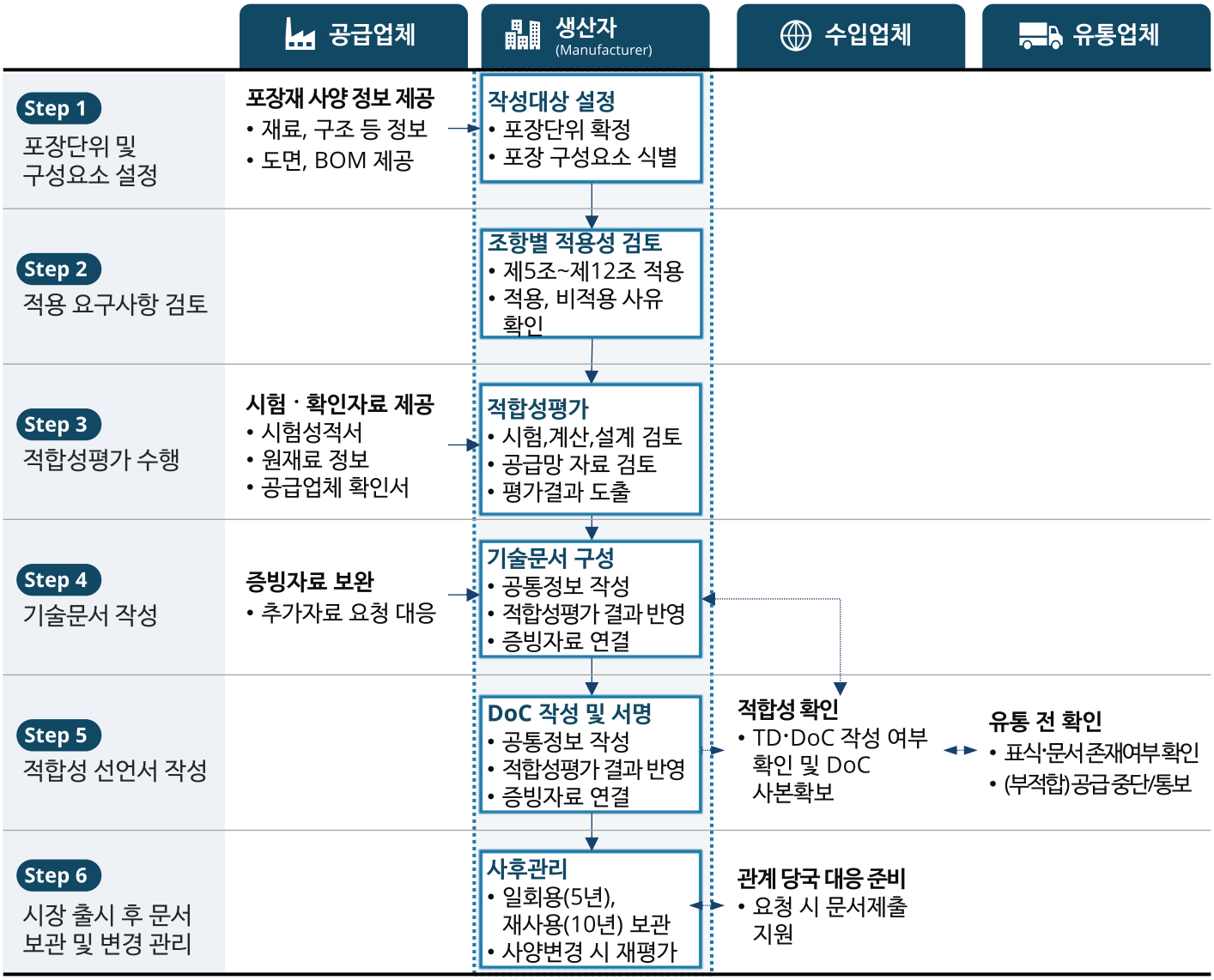

2. TD·DoC 작성 안내

» 포장 단위 및 구성요소 설정

- 기술문서(TD)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선언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 단위의 본체와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의 기능·재료·중량·결합 및 분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한다. 이때 물리적 분리 가능성뿐만 아니라 포장의 사용·운송·선별 및 폐기 과정에서 구성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정 결과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용 여부와 평가범위, 시험·산정 단위 및 확보하여야 할 근거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적용 요구사항 검토

- 설정된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별 적용시점과 해당 포장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적용 여부는 포장의 용도, 재료, 구조, 내용물 접촉 특성, 재사용 방식 및 포장 종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 적용되지 않는 요구사항 및 후속기준이 마련된 이후 평가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그 판단 사유를 함께 기록한다. 이를 통해 조항별 평가대상과 대응방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시험이나 자료 확보를 줄일 수 있다.

» 적합성평가 수행

- 적용되는 요구사항별로 평가대상과 세부 평가항목을 정하고, 시험·계산·설계 검토 또는 공급업체 자료 검토 등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물질 함량이나 포장 성능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중량비나 재활용 원료 비율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포장 구조와 구성요소의 분리 가능성은 도면·BOM·사양서 등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는 실제 포장의 재료·색상·중량·인쇄·코팅 및 후가공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와 연결하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후속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확인사항 또는 향후 평가사항으로 구분한다.

2. TD·DoC 작성 안내

» 기술문서 작성

- 생산자(Manufacturer)는 적합성평가를 통해 확인한 포장정보,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부속서 VII에 따라 기술문서에 기록한다. 기술문서는 단순히 적합 또는 부적합 결과를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포장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튜브형 작성 사례는 부속서 VII 대응표, 포장 일반사항 및 적용 기술표준, 조항별 적합성 입증, 시험성적서 및 적합성 입증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결과에는 관련 도면·BOM·시험성적서·공급업체 확인서 등의 문서번호와 버전을 연결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 생산자는 기술문서를 통해 포장이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부속서 VIII에 따라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한다. EU 적합성선언서는 기술문서의 평가내용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선언대상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다. 생산자 정보, 선언대상 포장, 포장의 기능, 적용 법규와 요구사항, 관련 기술문서 및 서명정보 등을 작성한다. 포장명·포장 단위·기능·적용범위 및 평가결과는 기술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여야 한다.

» 문서 보관 및 변경관리

- 생산자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를 일회용 포장은 시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은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구조·공급업체·제조공정 또는 관련 표준과 법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적합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를 다시 수행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를 개정한다. 문서번호·버전·개정일·변경내용 및 승인 이력을 함께 관리하여 시장감시기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K·C·A
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s Association

https://kcia.or.kr

2026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CJ OLIVEYOUNG · LG생활건강 · CHANEL · 신세계 인터내셔날 · AMOREPACIFIC
애경 · L'ORÉAL KOREA · 유한킴벌리 · Aēsop · ESTĒE LAUDER COMPANIES · Zero to Seven
COSMAX · Amway · Johnson&Johnson · Kolmar · P&G

Graphics by Freepik

대한화장품협회의「Cosmetic Industry Insight Report 2026」은 Deloitte 전문가들이 수집한 EU PPWR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사에 PPWR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6년 7월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위임·이행법령, 조화표준, 재활용성 평가기준 및 관계 당국의 지침·해석 등 세부 이행기준은 지속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DoC의 상세 작성방법과 튜브형 화장품 포장 작성사례 및 양식은 대한화장품협회의「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